

(3) (참고) 시간제공무원 경력과 시간강사 경력의 환산

-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(이하 시간제 공무원이라 한다)의 경력기간 계산은 영 제8조제2항 및 보수지침에 따르고,
- 유·초·중등 강사,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예규의 [별표1] “3. 가. 강사 등 경력”에 따라 환산함
-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교원경력 및 유사경력 기간은 영 [별표 22] 비고 제4호와 보수지침에 따라 환산함



예시

〈유·초·중등 시간강사 근무경력 환산 예시〉

⇒ 예규 [별표1] 3-가. ‘강사 등 경력’ 참고

- 2002. 4. 1. ~ 2002. 7. 20.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: 3월 20일
※ '05. 2. 28. 이전 경력으로 **주당평균근무시간 44시간** 기준 적용
- 3월 × (22시간/44시간) = 1.5월 = 1월 15일(0.5월×30일 = 15일)
- 20일 × (22시간/44시간) = 10일
☞ 경력기간 : 1월 25일
- 2005. 4. 4. ~ 2005. 7. 19.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. : 3월 16일
※ '05. 3. 1.부터 '06. 2. 28. 사이의 경력이므로, **주당평균근무시간 43시간** 기준 적용
- 3월 × (22시간/43시간) = 1.5월 = 1월 15일(0.5월×30일 = 15일)
- 16일 × (22시간/43시간) = 8일(소수점 이하 절사)
☞ 경력기간 : 1월 23일
- 2011. 3. 1.부터 2011. 7. 11.까지 A학교(주당 6시간), B학교(주당 10시간), C학교(주당 6시간)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: 4월 11일
※ '06. 3. 1. 이후의 경력이므로, **주당평균근무시간 42시간** 기준 적용
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종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
- 4월 × (22시간/42시간) = 2.1월 = 2월 3일 (0.1월×30일 = 3일)
- 11일 × (22시간/42시간) = 5일(소수점이하 절사)
☞ 경력기간 : 2월 8일
. 총 경력환산 기간 : 4월 56일 ⇒ 5월 26일



예시

〈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교원경력 및 유사경력 기간 예시〉

⇒ 예규 [별표1] 3-라. ‘그 밖의 경력’ 참고

- 2015. 4. 1. ~ 2017. 7. 20.까지 교원 임용 전 공공기관에서 주당 30시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: 2년 3월 20일
- 2년 × (30시간/40시간) × 5할 = 9월
- 3월 × (30시간/40시간) × 5할 = 1.125월 = 1월 3.75일(0.125월×30일 = 3.75일)
- 20일 × (30시간/40시간) × 5할 = 7.5일(소수점 이하 절사)
☞ 경력기간 : 10월 11.25일 ⇒ 10월 11일(소수점 이하 절사)
- 2017. 9. 1. ~ 2019. 12. 20.까지 교원 임용 전 초등교원자격을 갖추고 중학교에서 주당 30시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: 2년 3월 20일
- 2년 × (30시간/40시간) × 8할 = 14.4월 = 1년 2월 12일(0.4월×30일 = 12일)
- 3월 × (30시간/40시간) × 8할 = 1.8월 = 1월 24일(0.8월×30일 = 24일)
- 20일 × (30시간/40시간) × 8할 = 12일
☞ 경력기간 : 1년 4월 18일
. 총 경력환산 기간 : 2년 2월 29일